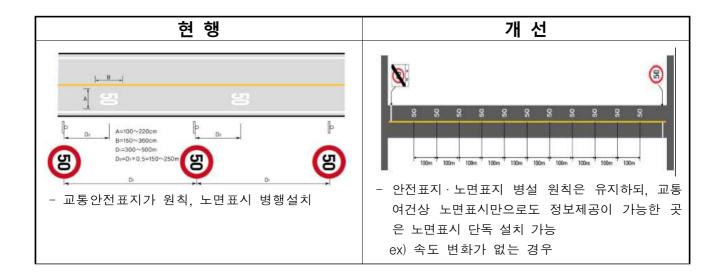
## 「안전속도 5030」사대문 內 시범운명을 위한

#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선 요청

#### □ 개선요청 내용

① <제한속도 시설 설치기준 변경> : 관련 매뉴얼 상 제한속도의 '안전 표지·노면표시 병설' 규정을 '노면표시 단독설치 가능'하도록 개선



② <신규 보조표지 > : 「안전속도 5030」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 내의 기본 제한속도가 50km/h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조표지 신설

【속도표지 (안)】



※ 노란색 바탕의 표지는 운전자의 시선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 도심부 내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인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□ 주요 내용

① <제한속도 시설 설치기준 변경>

#### ◈ 현황 및 문제점

- ▶ §도로교통법 상, 제17조(자동차등의 속도)에서 경찰청장(고속도로) 및 지방경찰청장(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)이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 및 최저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,
- ▶ 관련 교통안전시설로 안전표지(최고속도제한, 224번)과 노면표시(속도제한, 612번)이 있으나 해당 두 시설물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
- ▶ 「교통노면표시 매뉴얼」에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를 우선, 노면 표시는 병행하여 설치토록 제시하고 있으나,
- ▶ 주차차량 등 지장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노면표시가 안전표지보다 시인성이 우수하며,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

## ◈ 개선방안 : 사대문 內 시범운영 시행, 교통안전시설 관련 매뉴얼 개정

- ▶ 시범운영 개요
- O 서울시 사대문 안 구역은 '안전속도5030' 정책 시행에 따라 面단위로 제한 속도를 기본 50km/h,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30km/h로 일괄 지정, 짧은 간격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적음
  - (제한속도 50km/h 구역)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50km/h 시·종점부와 교차로 부분에는 현행과 같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되, 링크 구간에는 노 면표시 단독 설치
- (제한속도 30km/h 구역)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30km/h 제한속도 노면표시 단독 설치
- ▶ 시범운영에 따라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를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통 여건 상 노면표시만으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단독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개정

#### ② <신규 보조표지>

#### ◆ 현황

▶ 현행 도로교통법령 상에는 해당 보조표지에 대한 내용은 없음

## ◈ 개선방안 : 사대문 內 시범사업 시행, 효과분석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검토

- ▶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점에는 하단에 도심부\*라는 표지를 설치하여 해당 표지가 설치된 지역은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50km/h로 지정된 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
  - \* 주거·상업공간이 밀집되어 있고, 보행자 통행이 많아 안전을 위해 제한속 도 하향이 추진된 공간을 '도심부'로 지정
- ▶ 시범운영 구간(서울시 사대문 내)은 개선된 교통안전표지 기준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 검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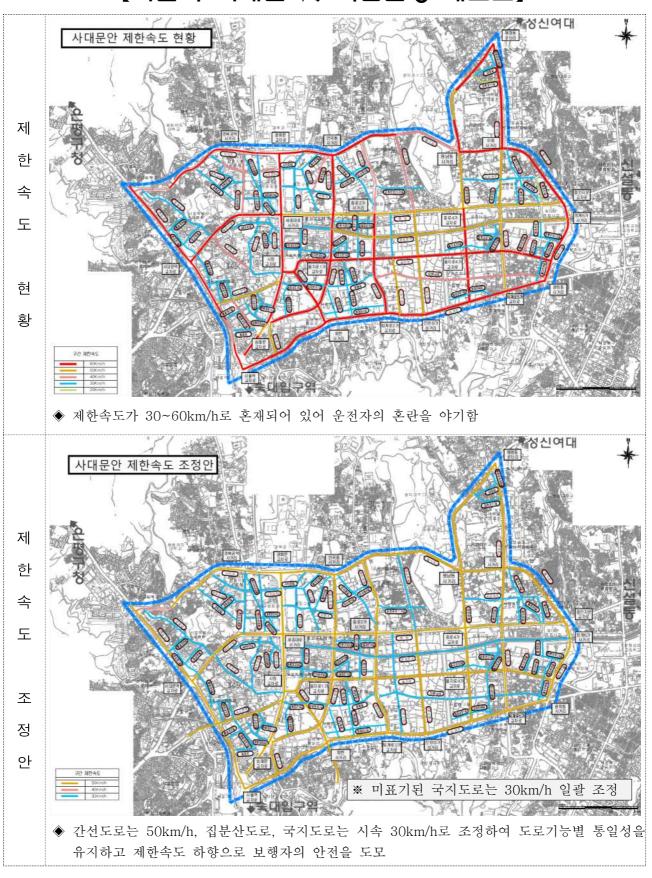
<서울시 사대문안 시범설치 예시>

## □ 향후 계획

- O 시범사업 시행전후 사업시행 효과 분석 시행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방법 변경, 도심부 보조표지의 향후 정식규격 승인 검토
  - \* 사업시행 전, 시행후 운전자 인지도 변화, 통행속도 및 교통사고 변화 등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업시행 효과 분석

# 참 고 자 료 1

# 【서울시 사대문 內 시범운영 개요도】



#### 참고자료2

# 【교통노면표시 매뉴얼 개정안(서울시)】

# 현행 매뉴얼 개 정 (안) ○ 교통안전표지(224)와 함께 설치한다 ○ 교통안전표지(224)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, 교통여건상 노면표시만으로도 정 보제공이 가능한 곳에는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 도록 개정 ○ 제한속도 시속 30km 적용도로에는 최대크기의 70% 이하로 도색 권장 ○ 설치방법 ○ 간선도로 설치방법 B=150~350cm D:=300~500m D:=D:×0.5=150~250r - 교통안전표지가 원칙, 노면표시는 병행가능 ○ 이면도로 설치방법 30 이면도로간 교차부 8 보차혼용도로(이면도로 등) 30 - 표지는 주요 결점점(교차로) 중심 설치 - 구간내는 속도노면표시 단독 설치 가능 - 보차혼용도로 등 이면도로에는 노면표시 단독으로 설치 가능토록 개정